

건축사 사무소의 등록 취소 및 폐쇄처분에 관한 규정

건설부 훈령 제447호

1979년 9 월 일
건설부장관

건축사법 제28조 및 동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#의거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취소 및 폐쇄처분에 관한 규정을 아래와 같이 공포한다.

제 1 조 (목적) 이 규정은 건축사법 제28조 및 동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취소 및 폐쇄처분에 따른 세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신고) 건축사법 시행령 제30조 제 1 호 나목 이외의 경우로서 건축법 또는 건축사법등에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하거나 허위로 신고를 한 경우에는 별표1의 기준에 의한다.

제 3 조 (성실의 의무등) 건축사법시행령 제30조 제 1 호 다목이외의 경우로서 건축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성실의 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한다.

제 4 조 (설계도서의 허위작성등) 건축사법시행령 제30조 제 1 호 다목이외의 경우로서 '설계도서 또는 현장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위법하게 설계를 하였을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한다.

제 5 조 (가중처벌) 1 차 적발시 동일인의 위반사항이 다수일 경우에는 1 회 위반으로 하고 동일내용의 위반사항이 4 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1 내지 3의 기준에 불구하고 등록취소를 하여야 한다. 다만, 별표 1 내지 3의 회수 계산은 1 개년내에 발생한 회수를 말한다.

제 6 조 (연대책임 건축사) 중간검사 신청이전(연대 책임 건축사가 중간검사 신청서에 날인하기 이전) 및 중간검사를 필한 후부터 준공검사 신청전까지 발생한 공사감리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실제로 공사감리를 한 자만이 그 책임을 진다.

제 7 조 (경감) 별표 3 의 2, 공사감리위반 사항중 중간검사 이전에 적출된 위반사항을 건축허가권자의 시정 지시에 따라 적법하게 시정된 경우에는 별표 3 () 안의

규정을 적용한다.

제 8 조 (착공신고) 건축법 제 7 조 및 동시행령 제 8 조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서의 제출없이 건축주가 일방적으로 사전 착공함으로서 발생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물의 감리자를 처벌하지 아니한다.

제 9 조 (청문)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취소하고자할 때에는 미리 당해 건축사에 대하여 청문을 하거나 필요한 경우에 참고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 다만,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제10조 (유사기준조정) 별표 1 내지 3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유사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.

부 칙

- (1) 이 규정은 1979. 10. 1부터 적용한다.
- (2) 종전의 처분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.

(별표 1) 신고를 태만히 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

위 반 사 항	위반회수처분기준			비 고
	1 회	2 회	3 회	
1. 신고를태만히한경우	경고	1 월	3 월	사무소등록 요건에대한 허위신고는 등록취소로 한다.
2. 허위신고를 한 경우	1 월	3 월	6 월	

(별표 2) 성실의 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

1.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하게 설계를 아니한 경우	6 월	1 년	등록 취소
2. 기타 사항	경고	1 월	3 월

(별표 3) 설계도서 또는 현장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위법하게 설계등을 하였을 경우

위 반 사 항	위반회수처분기준			비 고
	1 회	2 회	3 회	
1.설계도서 또는 현장 확인서의 허위 작성 및 위법설계				
①대지의면적, 형태등 현장확인서를 허위 작성하여 건축법 제 39조 내지 제41조의 범위를 초과하여 건축을, 용적율,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제한등에 위반된 사항을 적법한것으로 설계한 경우로서 처분일까지 적법하게 시정이 가능한 경우	6 월	1 년	등록 취소	
②제 1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측량의 착오 등 경미한 사유로 인한 경우	3 월	6 월	1 년	
2.공사감리 위반사항				
①면적				
가. 연면적10m ² 미만의 변경	경고 (경고)	1 월 (경고)	3 월 (1월)	
나. 연면적10m ² 이상 및 33m ² 미만의 변경	1 월 (경고)	3 월 (1월)	6 월 (3월)	
다. 연면적33m ² 이상 및 66m ² 미만의 변경	3 월 (1월)	6 월 (3월)	1 년 (6월)	
라. 연면적66m ² 이상 및 100m ² 미만의 변경	6 월 (3월)	1 년 (6월)	등록취소 (1년)	
마. 연면적 100m ² 이상의 변경	1 년 (6월)	등록취소 (1년)	면허취소	
바. 연면적 100m ² 이상이고 허가면적의 100%이상의 변경	등록취소 (1년)	면허취소		

위 반 사 항	위반회수처분기준			비 고
	1 회	2 회	3 회	
②건축물의 높이및 인접대지경계선 또는동일대지안의 인접 건축물까지의거리위반				
가. 허가보다 0.5m 이하의 변경	1 월 (경고)	3 월 (1월)	6 월 (3월)	
나. 허가보다 0.5m 초과1m이하의변경	3 월 (1월)	6 월 (3월)	1 년 (6월)	
다. 허가보다 1초과하는 변경	6 월 (3월)	1 년 (6월)	등록취소 (1년)	
③지하실의 높이위반				
가. 반자높이40cm이하 낮게한 경우	1 월 (경고)	3 월 (1월)	6 월 (3월)	
나. 반자높이40cm초과 낮게한 경우	3 월 (1월)	6 월 (3월)	1 년 (6월)	
다. 바닥으로부터지표면까지의 높이				
○50cm이하의위반	경고 (경고)	1 월 (경고)	3 월 (1월)	
○50cm초과 1 m 이하의 위반	1 월 (경고)	3 월 (1월)	6 월 (3월)	
○ 1 m 초과위반	3 월 (1월)	6 월 (3월)	1 년 (6월)	
④기타 사항				
가. 건축선 침범	3 월 (1월)	6 월 (3월)	1 년 (6월)	
나. 용도변경을#목적으로하는구조변경등	1 월 (경고)	3 월 (1월)	6 월 (3월)	
다. 배치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건축법령을 위반한 경우	경고 (경고)	1 월 (경고)	3 월 (1월)	
라. 건축법 또는 건축사법등에 의한 행정처분에 위반한 경우	1 월 (경고)	3 월 (1월)	6 월 (3월)	
마. 기타	경고 (경고)	1 월 (경고)	3 월 (1월)	